

국제법 현안 Brief



국제법 현안 Brief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최태현 교수 (한양대학교)
- 편집위원 오승진 교수 (단국대학교)
- 권현호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 김성원 교수 (원광대학교)
- 이기범 박사 (아산정책연구원)

투고문의 ksilbrief@gmail.com
웹사이트 www.ksil.or.kr

국제법 현안 Brief는 국제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최근 현안과 관련된 국제법 쟁점에 대한 인식과 최근 국제법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고르노 - 카라바흐(Nagorno - Karabakh) 분쟁의 검토 - *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언

‘나고르노-카라바흐’라는 지명은 ‘Нагорный Карабах’이라는 러시아어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 ‘산악지대의 카라바흐’ (mountainous Karabakh)라는 의미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면적은 약 4,400km²이고 인구는 2013년 기준으로 146,000명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던 1989년 당시 주민의 76%가 아르메니아계, 23%가 아제르바이잔계였다.

이 지역의 귀속을 둘러싸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에 1920년대 초부터 분쟁이 존재했다. 1920년대 초 우여곡절 끝에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함) 1922년 12월 소련(USSR)이 성립하면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둘 다 소련의 구성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 할 때까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두 구성공화국 간의 갈등은 단지 국내법상의 행정경계획정 문제에 불과했다. 연방국가였던 소련의 분열과 더불어 이 문제는 *uti possidetis* 원칙의 작동으로 인해 국제법상의 분쟁으로 변환되었다. 두 국가는 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이른바 ‘제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아르트사흐(Artsakh) 공화국’이라는 국명을 채택하고 독립을 선언하였다. 제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은 1994년 정전협정의 체결에 의해 일단락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만이 아니라 이 지역 주변의 아제르바이잔 영토(Agdam, Kalbajar, Lachin 등 3개 지역)까지 점령하였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3개 지역의 면적을 합하면 아제르바이잔 전체 면적의 약 20%에 달하였다.

1994년 정전협정에 의해 동결되었던 양국 간의 분쟁은 2020년 9월말 아제르바이잔의 영토회복을 위한 무력 사용으로 재점화되었다. 약 6주에 걸쳐 전개된 무력충돌에서 ‘제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1991-1994)에서와 달리 아제르바이잔이 군사적 우세를 보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군사적 성공에는 터키의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무력충돌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개한 11월 10일 합의(문서 명칭은 ‘Statement’)에 의해 종식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아르메니아는 1994년 이래 점령하고 있던 아제르바이잔 영토 3개 지역을 반환했다.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으로부터 자국군을 철수시키고 이 지역에는 2,000여 명의 러시아 병력이 평화유지군으로 최소한 5년간 주둔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 서부 지역과(아제르바이잔의 비령(exclave)인) 나흐치반 자치공화국(Nakhchivan Autonomous Republic) 간의 교통 연결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발발하였다. 시위대는 아르메니아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반해 일함 알리에브(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2020년 무력충돌의 결과를 “영광스러운 승리”로 규정하였다.

국제법적 시각에서 볼 때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다양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1991년 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언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주민의 민족자결권, 일방적 독립선언을 통해 수립된 ‘아르트사흐 공화국’에 대한 승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적 주장, 피점령 상태에 있던 자국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무력 사용의 적법성 여부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주제 중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적 주장과 관련하여 특히 *uti possidetis* 원칙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다. 먼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연혁을 고찰하고(II),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양국의 주장을 *uti possidetis* 원칙의 관점에서 살핀다(III). 마지막으로 지구상의 특정 지역을 넘어 일반적 차원에서 확립된 것으로 평가되는 *uti possidetis* 원칙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글을 맺도록 한다(IV).

2.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연혁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기원전 기록에 등장할 만큼 역사가 유구한 지역이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각각 이 지역에 대해 자국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해 왔다. 이 분쟁의 발발 및 전개와 직접적 관련을 맺는 사태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발생하였다. 러시아 혁명 직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각각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가 다시 소련에 편입되었다. 러시아 혁명 직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는 이슬람교도인 아제르바이잔계와 기독교도인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남부 코카서스에서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외에도 나흐치반, 잔게주르(Zangezur) 지역의 귀속을 둘러싸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에 다툼이 있었다. 이 문제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인근의 그루지아(Georgia) 출신으로서 당시 민족문제 담당 장관(commisr of nationalities)이었던 스탈린에 의해 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부 코카서스 국가들 간의 분열의 조장을 통해 소련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을 방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²

나고르노-카라바흐 귀속 결정에 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자. 1920년 12월 아제르바이잔 혁명위원회는 스탈린의 압력을 받고 나고르노-카라바흐, 잔게주르, 나흐치반 지역을 모두 아르메니아 통제 하로 이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은 4개월 뒤인 1921년 3월에 뒤집혔다. 이달 중순 소비에트 러시아(‘소련’으로 알려진 USSR은 1922년 12월에 창설되었음)와 터키는 나고르노-카라바흐와 나흐치반은 아제르바이잔에, 잔게주르는 아르메니아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 결정은 소비에트 러시아가 새롭게 성립한 터키 공화국을 자신의 잠재적인 동맹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내려졌다. 같은 해 7월 4일 스탈린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소비에트 러시아 공산당 코카서스 지부 회의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다시 아르메니아에 귀속시킨다는 결정이 채택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그 다음날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에 속하되 상당한 자치가 부여될 것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 나고르노-카라바흐의 귀속 및 지위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아르메니아 측은 1920년대 초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노력을 계속 전개하였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구 소련의 구성공화국이었고 구 소련 중앙정부의 실효적 통제가 작동하고 있던 시절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소규모로 가끔 발생하는 데 그쳤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로 취임하고 개방(glasnost)과 개혁(perestroika)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구 소련연방 안에서 원심력이 강화되었고 1920년대 이후 내연하던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1988년 2월 나고르노-카라바흐 당국자들은 이 지역을 아르메니아로 이속시켜 달라는 요청을 소련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양측 간 갈등이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주민에 대해 폭력이 가해졌다. 이와 같은 긴장과 갈등 속에서 1991년 9월 2일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의 독립이 선포되었다. 그해 가을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일방적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러자 아르메니아도 군사적 대응에 나서 다음 해에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변의 아제르바이잔 영토까지 점령하였다. 1991년부터 시작된 ‘제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은 1994년 정화 협정의 체결로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 1994년 이후 양국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2020년 9월에 발발한 ‘제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은 아르메니아 우위의 현상을 변경하여 양국의 경계를 대체로 제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발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켰다.

3.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양국의 영토적 주장 - *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국제법상 소련이 영토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시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분쟁은 국내법상의 행정관할에 관한 다툼의 성격을 지녔다. 양국이 주권국가로 등장한 1991년 이후에는 이 지역을 둘러싼 분쟁은 이제 국내법상의 관할권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영토주권에 관한 것으로 규정된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양국의 영토적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고 이들 주장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인가?

상세한 검토에 앞서 먼저 지적할 점은 1991년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했지만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어느 국가도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아르메니아가 이 공화국에 대해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의 영토적 주장은 아르메니아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먼저 아르메니아 측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이 지역과 긴밀한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유지해 왔음을 내세운다. 더 중요한 근거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아르메니아계라는 사실이다. 1991년 9월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독립선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아르메니아 측의 핵심적 주장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거주민의 민족자결권에 기초한다.³

아제르바이잔은 영토적 완전성(territorial integrity)의 원칙에 기초하여 아르메니아 측의 주장을 배척한다. 특히 연방국가였던 구 소련의 분열과정에서 적용되었던 *uti possidetis* 원칙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주장의 기초로 삼는다. 이 원칙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 규정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부르키나 파소/말리 사건 판결(1986)에 제시되어 있다 (탈식민지화 과정에서는 원래 식민제국 내부의 행정 경계가 완전한 의미에서의 국제적 경계로 전환한다고 판시함).⁴ 원래 이 원칙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성립하고 있던 스페인 제국이 19세기 초에 분열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이 원칙은 지역적 적용범위를 아프리카 대륙으로까지 확장하였다.⁵ 1990년대 초 냉전의 와해 과정에서 발생한 소련,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연방국가의 분열에도 *uti possidetis* 원칙이 적용되었다.⁶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 *uti possidetis*는 (이미 ICJ가 1986년 부르키나 파소/말리 사건에서 실시하였듯이)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독립의 성취라는 현상과 논리(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반적 원칙(general principle)”으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⁷

이와 같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영토주권에 관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대립은 민족자결의

원칙과 영토 완전성의 원칙 간의 긴장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견해가 후자의 원칙을 우선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ICJ는 여러 판결을 통해 국경의 “확정성과 최종성”(certainty and finality), “국경의 불가침성의 존중”(respect for intangibility of frontiers), “국경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원칙”(fundamental principle of the stability of boundaries) 등을 강조하였다. 국경 안정의 원칙은 1970년 UN 우호관계선언,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 1993년 독립국가연합 헌장, 2000년 아프리카 연합 설립헌장 등의 국제문서에도 규정되어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 관련된 UN 총회 및 안보리의 결의 역시 이러한 통념적 인식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7월 29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S/RES/853)에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the Nagorny-Karabakh region of the Azerbaijani Republic)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2008년 3월 14일자 UN총회 결의(A/RES/62/243)에서도 같은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구 소련과 같은 연방국가의 분열 시 *uti possidetis* 원칙을 통해 영토적 현상(*territorial status quo*)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범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실정 국제법의 내용에 대해 ‘유권적인’ 해석권을 보유하고 있는 ICJ의 *uti possidetis* 원칙에 관한 일련의 판결과 UN 안보리와 총회의 나고르노-카라바흐 관련 결의에 비추어 보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영토적 귀속에 관한 해답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제1차적 목적으로 표방하는(UN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는 국경 안정의 원칙을 중시하여 식민제국 또는 연방국가의 분열 시에는 *uti possidetis* 원칙을 적용한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사례 역시 *uti possidetis* 원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1991년말 구 소련의 분열 시점의 국경의 ‘스냅 샷’에 따라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에 속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4. *Uti possidetis* 원칙의 경직적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III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ti possidetis* 원칙의

법규범적 실정성과 적용범위의 일반성은 확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ICJ는 1992년 판결에서 이 원칙의 적용이 “중남미 지역의 대부분에서 명확하고 안정적인 국경”의 설정이란 결과로 이어졌다고 실시하며 *uti possidetis* 원칙의 실천적 중요성과 기여를 확인하였다.⁸ ICJ의 일련의 판결, UN 등 국제기구의 실행, 다수의 학설 등에 의해 관습국제법성이 의문의 여지 없이 확립된 것으로 보이는 이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실적 차원에서 과연 *uti possidetis* 원칙이 식민제국 또는 연방국가의 분열 시 “확실하고 안정적인 국경”의 설정에 중대한 기여를 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미 지역의 국경 설정과 관련하여 이 원칙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큼 중핵적이지 않았음은 이 지역 국경의 약 27%가 직간접으로 무력충돌에 의해 결정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⁹

Uti possidetis 원칙의 실정법규성 인정은 이 원칙이 발휘한다고 믿어지는 평화증진적 기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국경이 설정된 경우에도 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지는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의문이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분열과정에 대해서도 제기된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도 *uti possidetis*라는 국제법원칙은 관철되었지만 이 원칙의 적용이 발칸 반도의 평화 보존을 결과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의문 제기에는 대해 *uti possidetis* 원칙을 폐기하자는 것인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것처럼 과격한 주장이 수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식민제국이나 연방국가의 분열 시 기존의 국내 행정경계를 국경 협상의 출발점이 아니라(더 이상의 논의나 협상의 여지가 없는) 최종적인 국경으로 간주하는 경직적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⁰ 1986년 ICJ도 인정하였듯이 *uti possidetis* 원칙이 새롭게 탄생한 국가 간에 ‘동족살해적’(fratricidal)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독립 전 행정경계가 식민모국 또는 연방 내에서 패권적 지위를 가졌던 구성부분에 의해 자의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동질적인 집단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분열시키기 위해 행정경계가 획정된 경우에도 이

경계의 ‘최종성’ (finality)을 내세우며 협상이나 조정을 거부하는 것이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Uti possidetis* 원칙의 실정법규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원칙의 적용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다. *Uti possidetis* 원칙의 무성찰적·기계적 적용이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예를 들어 행정경계가 동질적 집단 거주 지역을 가로지른다면, 소수자(minority)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거주 지역이 이들 소수자와 적대 또는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에 의해 위요지(enclave)화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행정경계를 출발점으로 삼아 관련 당사국 간에 신의칙에 좇은 협상을 수행한다든지 지역적 국제기구 또는 국제사법·중재기관 등을 통한 제3자적 해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 *uti possidetis* 원칙을 기존 행정경계의 즉각적이고 최종적인 국제적 경계로의 전환으로 해석한다면 국제관계상의 불안정과 충돌의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필자 소개 ⋮

이근관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법 헌안 Brief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한국제법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 1 이 글에는 ‘enclave’와 ‘exclave’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현재 이들 영문 용어에 대한 역어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글에서는 각각 ‘위요지(圍繞地)’와 ‘비령(飛領)’으로 번역한다. ‘위요지’는 특정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단일한 외국의 영토에 의해 둘러싸인 경우를 가리킨다. ‘비령’은 특정 국가의 영토의 일부가 본토로부터 격리되어 단일 또는 복수의 다른 국가의 영토에 의해 둘러싸인 경우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바티칸 시국(市國)이나 산 마리노는 이탈리아 영토에 의해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나흐치반 자치공화국은 아제르바이잔에 속하지만 본토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므로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에서 보면 ‘비령’에 해당한다. 다만 나흐치반 자치공화국은 아르메니아, 이란, 터키와 접경하고 있으므로 단일한 외국의 영토에 의해 둘러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요지’는 아니다.
- 2 이하의 서술은 다음 문헌에 의존한 것이다. Svante E. Cornell, “Undeclared War: The Nagorno-Karabakh Conflict Reconsidered”, *Journal of South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vol. 20 no. 4 (summer 1997).
- 3 Andriy Y. Melnyk, “Nagorny-Karabakh”, *Max Planck Encyclopedias of International Law* (May 2013), para. 14. Melnyk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대외적 민족자결권의 행사 주체가 되는 ‘peopl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Ibid.*
- 4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Mali), ICJ Reports 1986, p. 566 (para. 23) (“administrative boundaries being transformed into international frontiers in the full sense of the term”).
- 5 *Uti possidetis*의 개념과 연혁에 관해서는 Giuseppe Nesi, “*Uti possidetis* Doctrine”, *Max Planck Encyclopedias of International Law* (February, 2018), paras. 1-10; 박희권, “UTI POSSIDETIS 原則의 研究 - 부르키나파소·말리間 國境紛爭에 관한 ICJ 判決을 中心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35권 1호 (1990), pp. 186-189 참조.
- 6 유고슬라비아,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분열과정에서 *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해서는 Giuseppe Nesi, *L’Uti Possidetis Juris nel Diritto Internazionale* (CEDAM, 1996), pp. 179-195 참조. Badinter 위원회는 1992년 1월에 내린 제2의견에서 *uti possidetis* 원칙이 구 유고슬라비아의 분열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Conference on Yugoslavia Arbitration Commission, Opinion No. 2,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31 (1992), p. 1498.
- 7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Mali), ICJ Reports 1986, p. 565 (para. 20).
- 8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El Salvador/Honduras: Nicaragua intervening), ICJ Reports (1992), p. 386 (para. 41).
- 9 Jean-Marc Sorel & Rostane Mehdi, “L’Uti Possidetis entre la Consécration Juridique et La Pratique : Essai de Réactualisation”,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vol. 40 (1994), p. 29.

- ¹⁰ *Uti possidetis* 원칙에 따른 경우 기존 행정경계가 바로 최종적인 국경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국가 간의 평화적 해결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인 국경으로 존재한다는 견해에 관해서는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Niger), ICJ Reports (2013), Separate Opinion of Judge Yusuf 참조.